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7914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위적 피고B단체

예비적 피고1. C

2. D

변론 종결2018. 5. 23.

판결 선고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8m² 지상 단층 하부 세멘트벽돌조 및 상부 조립식패널조, 조립식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8㎡ 지상 단층 하부
세멘트벽돌조 및 상부 조립식패널조, 조립식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그런데 주위적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예비적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중선

별지